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 협약의 평가와 실무적용상 유의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Valuation for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저자
(Authors) 심종석
 Chong-Seok Shim

출처
(Source) [e-비즈니스연구 9\(4\)](#), 2008.11, 241-265 (25 pages)
 [The e-Business Studies 9\(4\)](#), 2008.11, 241-265 (25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제e-비즈니스학회](#)
 Global E-Business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769367>

APA Style 심종석 (2008).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 협약의 평가와
 실무적용상 유의점에 관한 고찰. [e-비즈니스연구](#), 9(4), 241-265.

이용정보
(Accessed) 대구대학교
 203.207.31.89
 2015/11/26 12:5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 협약의 평가와 실무적용상 유의점에 관한 고찰

심 종 석*

초 록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를 통일된 국제법규범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아울러 ‘국제물품매매에관한UN협약’(CISG)의 부속협약으로서 그 법적 지위를 담보하고 있는 ‘국제계약에있어전자적의사표시의이용에관한UN협약’(UECIC)의 규정내용을 평가하고, 아울러 금명간 국내실정법으로서 UECIC의 적용에 대비한 실무적용상 유의점 도출에 목적을 두었다.

명실공히 UECIC는 전자상거래에 임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국제계약의 법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술중립성 및 등기능성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 국제사법상 법률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매체와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실익을 담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한 선도적 입법례로서 실익이 기대되는 UECIC를 올바로 이해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국제상사계약의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법적·상무적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전자상거래, 국제물품매매에관한UN협약, 국제계약에있어전자적의사표시의이용에관한UN협약

< 차 례 >

- | | |
|-----------------------|------------|
| I. 서 론 | V. 요약 및 결론 |
| II. UECIC의 제정취지와 구성체계 | <참고문헌> |
| III. UECIC의 주요 골자 | <ABSTRACT> |
| IV. UECIC 실무적용상의 유의점 | |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 (경영학박사·법학박사)

I. 서론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분야의 핵심기축으로서 시의적으로 급진전하고 있는 정보처리 시스템(information processing system)은 상인간 상거래 자료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모름지기 그 자체가 상거래 활동의 배경이 되고도 있는데, 그 결과 당해 상거래계에 있어 법적 확신에 의한 상관습의 체계화는 상대적으로 실정법상의 경화(hardship)현상을 더욱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같은 시각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적 급진전은 전통적 상거래에서는 고려할 수 없었던, 이를 테면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automated message system) 등의 개념을 상용화하였는데, 주지하듯 이들 개념은 그간 전자상거래에 있어 새로운 법규범을 제정하는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살피기에 이상의 개념들은 전통적 종이문서[paper-based document]에 근거한 종래 국제상사법규범이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경우 정보처리능력을 보유한 전자적 통신수단의 사용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법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되었던 까닭에, 당해 새로운 법범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기능적 차원에서 피치 못할 입법적 산물이었다.

한편 그간 종이문서에 기초한 종래 국제상사법규범은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국제계약에 있어 그 적용상 상당한 법적 장애 내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었는데, 예컨대 전자계약(electronic contracting)¹⁾의 성립요건, 데이터 메시지에 의한 청약과 청약의 유인, 전자계약 당사자의 소재지,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 및 형식요건, 데이터 메시지의 송·수신시기 및 장소 등은 대표적인 법 적용 혼선의 대상이었다.

이 같은 장애 내지 문제점에 대응하여 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이하 ‘UNCITRAL’)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법원칙을 제시하고, 동시에 전통적 종이문서에 기한 법적 장애와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한 취지에서 1996년 ‘전자상거래에관한UNCITRAL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 이하 ‘UNCITRAL 모델법’)을 필두로 2001년 ‘전자서명에관한UNCITRAL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등을 공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원칙 내지 모델법은 국제상사계약에 입한 계약당사자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온전히 담보할 수 없었던 까닭에, 무엇보다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

1) 일반적으로 전자계약(electronic contracting)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메시지에 의한 계약으로 총칭된다(北川善太郎, 2002). 때로는 ‘시스템 계약’이라고도 칭하고 있으나, 생각건대 전자계약은 그 의미상 전자적 방식 및 통신수단을 포함하는 개념, 즉 데이터 메시지에 의한 계약으로 총칭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 계약’을 포괄하고 있다고 이해하여야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은 통일법 제정의 필요성은 시의성 있게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통일법 제정의 당위에 기하여 UNCITRAL에서는 종전까지 국제상거래에 있어 가장 성공한 선도적 입법례로서 그나마 당해 분야에 적용가능할 수 있었던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이하 ‘CISG’²⁾)을 모토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국제계약상 부각된 법적 문제점 및 그 보충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정을 위한 성안작업에 착수하였는 바, 곧 2001년 ‘전자상거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 이하 ‘WG’)을 구성하고, 이후 CISG의 부속적 협약의 성격으로 새로운 법제정을 위한 성안작업에 착수하기에 이르러, 마침내 그 결과로서 최종안이 2005년 11월 제60차 UN총회에서 채택되게 되었다.

현재 동 입법안은 다자간 협약으로서의 지위를 표창하고 공식명칭을 ‘국제계약에있어전자적의사표시의이용에관한UN협약’(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 이하 ‘UECIC’)으로 명명하여 2006년 이후 2년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해 두고 있다.³⁾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를 통일된 국제규범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그 법적 지위를 담보하고 있는 UECIC의 규정내용을 평가하고, 아울러 향후 UECIC의 적용에 따른 실무적용상 유의점 도출에 목적을 두었다. 이로부터 UECIC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국제상사계약의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나 또한 유관분야의 후속연구에 일조할 수 있는 방편에서 적의 고려할 수 있는 법적·상무적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2) ① UNCITRAL에 의해 성안된 CISG는 그간 UNCITRAL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입법례로 평가된다. 연혁에 비추어 CISG는 서로 다른 각양의 법체계를 조화롭게 통합해 두고 있는 반세기에 걸친 국제적 노력의 산물로서 그 위상에 걸맞게 본 고 제출시점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 UN에 동 협약에의 가입서를 기탁하여 동 협약 제101조 (2)항에 의거 2005년 3월 1일 부로 국내법으로 수용하였다. 따라서 CISG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한, 우리 민·상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점한다.) 전 세계 73개국이 비준·가입하고 있는 실정의 국제협약으로서 지위를 점한다. 모름지기 CISG가 국제상거래에 있어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한 가장 성공한 선도적 입법으로서 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② 명칭에 있어 CISG는 성안된 지명을 차용, 달리 ‘Vienna Convention’, ‘UNCCISG’ 등으로도 사용된다. 본 고는 이하 동 협약에 대한 UNCITRAL에서의 공식 명칭을 좇아 이하 ‘CISG’로 통일한다. 아울러 국문의 경우 ‘국제물건매매계약에관한UN협약’ 또는 ‘국제동산매매계약에관한UN협약’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나, 본 고는 동 협약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상무적 이해와 그 적용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하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UN협약’으로 통일한다.

3)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5일 UECIC에 공식 서명하였다.

II. UECIC의 제정취지와 구성체계

1. 제정취지

연혁에 비추어 UECIC는 앞서 언급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의 제반 모델법이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과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계약의 체결 시 CISG를 적용할 경우 법적 장애 및 보충의 여지가 예견되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에 따라 성안되었다.

당초 UNCITRAL의 WG는 2001년 UECIC의 전신으로서 ‘데이터메시지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입증되는 [국제] 계약협약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ntracts Concluded or Evidenced by Data Message)을 마련하였는데,⁴⁾ 동 예비초안은 CISG를 기초로 UNCITRAL 모델법을 병합하여 전자계약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의 초안적 성격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동 예비초안에 반영되고 있는 주요 법규범으로는 ‘EU Directive’,⁵⁾ 캐나다 ‘통일전자상거래법’(Uniform Electronic Commerce Act : 이하 ‘UECA’),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이하 ‘UETA’) 등이 있다.⁶⁾

요컨대 UNCITRAL에 의해 성안된 UECIC는 증가하고 있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이 국제상거래의 효율성 증대 및 무역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종전 격지자간 계약당사자와 시장에 새로운 접근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전제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의 법적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이 국제무역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 제반 국제통일법규범의 적용으로부터 기인하는 장애를 비롯한 국제계약상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따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안되었음을 천명하고 있다.⁷⁾

결과적으로 UECIC는 국제상거래에 임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국제계약의 법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술적 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 및 ‘기능적 동가성’(functional equivalence)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 국제사법상 법률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매체와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실익을 담보하고 있다.⁸⁾ 나

4) 동 초안의 규정원문은 UNCITRAL, UN General Assembly A/CN.9/WG.IV/WP.95, Annex I.을 참조.

5) 원명은 ‘Directive 2000 /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et market.’ 이다. 동 지침의 골자는 역내 시장 정비에 관한 회원국 실정법 규정의 정비, ‘정보서비스 제공자’(information service provider : 이하 ‘ISP’) 책임, 전자계약, 전자상거래의 행위규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 재판 및 회원국 협력 등이다. 또한 전자적으로 체결된 전자계약의 법적 유효성, ‘클릭 실수’(click faults) 등 계약체결과정의 문제에 대한 대응, 가상공간상 전자계약에 대한 규칙에 대하여 회원국이 당해 관련법을 정비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기본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EU Directive, 2000).

6) UN General Assembly A/CN.9/WG.IV/WP.95, paras. 75, 81.

7) UN General Assembly A/RES/60/21. pp.2-3.

아가 UECIC는 상이한 법률·사회·경제제도를 가진 당사국이 적의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의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일반적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입법적 함의를 새길 수 있다.

2. 구성체계

UECIC는 전문(preamble) 외에 총 4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순차적으로 그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제1장은 UECIC의 적용영역(sphere of application)으로서 적용범위(scope of application : 제1조), 예외조항(exclusions : 제2조), ‘당사자 자치권’(party autonomy : 제3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정의(definitions : 제4조), 해석(interpretation : 제5조), ‘당사자의 위치’(location of the party : 제6조), 정보요건(information requirements : 제7조) 등에 관한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으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정의조항에는 UECIC상 핵심용어로서 의사표시(communication) 내지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송·수신자(originator·addressee),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automated message system), 영업소(place of business) 등에 대해 명정하고 있다.

제3장은 ‘국제계약에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에 관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 제8조)과 형식요건(form requirements : 제9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 제10조), ‘청약의 유인’(invitations to make offers : 제11조), ‘계약체결시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의 이용’(use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for contract formation : 제12조),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contract terms : 제13조) 그리고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error in electronic communications : 제14조) 등에 대한 법적 기준 내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끝으로 제4장은 최종규정(final provisions)으로서 기탁처(depositary : 제15조), ‘서명·비준·수락 또는 승인’(signature·ratification·acceptance or approval : 제16조),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참여’(participation b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 제17조), ‘국내영역 단위에서의 효력’(effect in domestic territorial units : 제18조), ‘적용범위의 선언’(declarations on the scope of application : 제19조) ‘기타 다른 국제협약상 의사표시의 교환’(communications exchanged under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s : 제20조),⁹⁾ ‘선언의 절차와 효력’(procedure and effects of declarations

8) ‘Guide to enactment of the UNCITRAL Model Law’, I, E.

9) 동 조와 관련 UECIC 가입국이 다음 국제협약의 체약국이거나 체약국이 될 경우 당해 국제협약상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에 관련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UECIC가 당연히 적용됨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곧 당해 협약은 i)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제21조), ‘유보 및 발효’(reservations and entry into force : 제22조-제23조), ‘적용시기 및 폐기’(time of application and denunciations : 제24조-제25조) 등에 대한 절차상의 요건 등을 다루고 있다.

Ⅲ. UECIC의 주요 골자

1. 적용영역과 예외 및 당사자 자치권

1) 적용범위

국제 전자상거래에 있어 영업소(place of business)의 특징과 관련하여 문제시 될 수 있는 논점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 또는 체결된 시점에 양당사자에 의하여 당해 영업소가 명확히 표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과연 영업소가 유추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안이다.

당해 사안은 전자계약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을 고려함에 있어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에 관한 영업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규정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에 귀결되는데, 이는 곧 영업소의 개념을 CISG와 같은 현행의 국제협약에서 정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의미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정보시스템 및 이를 지원하는 장비의 위치 또는 그러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과 같은 요소들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장비 및 기술의 위치는 적절한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역으로 계약당사자에 대한 영업소의 충분한 표시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일례로 매도인을 대신한 계약은 매도인의 웹사이트를 연결해주는 ISP의 컴퓨터에 의해 매수인과 자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고정된 장비 없이 또는 특정한 장소에 회사의 약정을 등록하지 않고서도 물리적 장소와 연관성 없이 정보시스템만의 사용을 통해 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위 이러한 가상공간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가상기업(virtual companies)의 경우 본인의 영업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UECIC는 우선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 계약의 성립

the ‘New York’ Convention : 1958), ii) ‘국제물품매매에서의제한기간에관한협약’(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1974), iii) ‘CISG’, iv) ‘국제상거래에서의터미널운송업자의책임에관한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iability of Operators of Transport Terminals in International Trade : 1991), v) ‘독립보증장및스탠드바이신용장에관한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 1995), vi) ‘국제상거래에서수취계정채무양도에관한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 2001) 등이다.

또는 이행에 관련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적용된다고 전제하고, 이 경우 영업소는 당사자가 특정장소 밖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일시적 제공을 하는 곳이 아닌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상설적 설비를 가지고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UECIC, 제4조 h항), 규정내용상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해 계약이나 당사자간 상거래로부터 또는 계약체결전 또는 체결시에 계약당사자가 공개한 정보로부터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고 하여(UECIC, 제1조 1~2항. 연관규정으로서 CISG, 제10조),¹⁰⁾ 국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영업소의 개념 내지 소재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적용배제

한편 당사자의 국적이나 당사자 또는 계약의 민사적 또는 상사적 성격은 UECIC 적용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아니한다고 하고(UECIC, 제1조 3항 및 연관규정으로서 CISG, 제1조 3항), 이에 결부하여 i) 개인적·가족적 또는 가사의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ii) 등록된 거래소에서 환거래, iii) 외국환거래, iv) 은행간 지급시스템 및 지급약정 또는 담보나 기타 금융자산·증권에 관련된 결산 시스템, v) 매매·대부 또는 점유에 관련된 담보권 이전 또는 담보성 환매약정이나 기타 중개자를 통해 간접 보유한 금융자산·증권을 포함하여(UECIC, 제2조 1항), vi) 환어음·약속어음·양도증서·선하증권·창고증권 기타 소지인이나 수익자에게 운송물 인도 또는 대금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성 증권 등에는 UECIC를 적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UECIC, 제2조 2항. 연관규정으로서 CISG, 제2조 d항).

i)의 취지는 당해 거래가 국제성(internationality)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내거래가 대부분이고 또한 UECIC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국내법규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입법적 배려의 결과이다. 여타의 예외조항은 대개 무체자산(invisible assets)에 해당하는 적용배제의 사항으로서 CISG의 부속적 협약으로서 UECIC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UECIC 또한 ‘물품의 매매’(sale of goods)에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vi)에 해당하는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을 제외함에 있어서, 예컨대 창고증권(warehouse receipts)이나 선하증권(bill of lading)¹¹⁾ 등과 같이 ‘물품의 인도’(delivery of goods)를 지배하는 서류는 그 자체가 물품의 인도를 위하여 사용된 경우 마땅히 UECIC 적용을 받게 됨은 유의하여야 한다(Honnold, 1999).

10) UECIC는 생략적으로 CISG를 모체로 성안된 연혁을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실무적용상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CISG의 법리적 이해가 요구된다. 본고는 이점을 고려하여 이하 UECIC의 관련규정에 참고 내지 비교할 수 있는 CISG의 규정을 결부하여 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1) 대개 선하증권(船貨證券)은 법률용어로서 선하증권(船荷證券)에 의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생각건대 전자는 계약적 시각에서 화주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무적 용어로, 후자는 운송인의 법적 책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법률용어로 간주된다. 따라서 법적 시각이 아닌 무역상무적 시각에서는 용당 선하증권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당사자 자치권

UECIC는 임의법규로서 국제계약에 임한 계약당사자는 UECIC 적용을 배제하거나 각 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UECIC, 제3조 및 연관규정으로서는 CISG, 제6조).

동 규정은 당사자 자치에 대한 유일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이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UECIC상의 모든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폭넓은 당사자 자치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본 규정은 당사자들이 UECIC를 그들의 계약에 공히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불명확성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2. 일반규정

1) 정의

강학상 의사표시(Willenserklärung)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로서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로 설명되는데, UECIC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당해 의사표시(communication)를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과 관련, 청약과 청약의 승낙을 비롯한 당사자에게 요구되거나 당사자 선택에 따른 모든 진술(statement)·선언(declaration)·요구(demand)·통지(notice) 또는 요청(request)을 의미한다고 하고, 이에 결부하여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를 당사자가 데이터 메시지의 방법으로 행한 모든 의사표시로 일괄하고 있다(UECIC, 제4조 (a)항).

이 경우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는 전자적(electronic)·자기적(magnetic)·광학적(optical)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작성(generated)·전송(sent)·수신(received) 또는 저장(stored)되는 정보를 의미하며, 이는 전자데이터 교환·전자우편·전보·전신 또는 모사전송을 포함하나, 다만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조항은 UNCITRAL 모델법에서 수용한 개념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서 모름지기 각국 및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제반 실정법규에서도 공히 그 의미는 동일하다.¹²⁾

한편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 송신자(originator)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저장 이전에 이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작성한 당사자를 의미하며, 같은 경우로 수신자(addressee)는 송신자가 전자적 의사표시를 수신하도록 의도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다만 당해 전자적 의사표시와

12) 참고할 수 있는 법규범은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항., ‘OECD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 1997’, Chap. III., ‘ICC 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 eUCP’, Art. e3.,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 1990’, Art. 11., 미국 UETA, Sec. 2, (7), (13), ‘Uniform Computer Transactions Act : 이하 ‘UCITA’’, Sec. 102, (28), (54),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 이하 ‘E-Sign’’, Sec. 106, (4), 캐나다 UECA, Art. 1, (a), 일본의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關する法律’, 第2條., 말레이시아의 ‘Digital Signature Bill : 1997’, Art. 2 등.

관련된 송·수신자의 지위에 있어 공히 중개인(intermediary)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은 데이터 메시지의 작성·전송·수신·저장 기타 그 밖의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말하며,¹³⁾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automated message system)’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위를 개시하거나 데이터 메시지 또는 그 실행에 응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화 또는 그 밖의 자동화된 수단으로서 시스템에 의하여 행위가 개시되거나 응답이 생성될 때 자연인에 의한 검토나 개입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2) 해석

UECIC의 해석에 있어서는 동 협약의 국제적 특성 및 국제상거래의 통일적 적용의 촉진과 국제상거래에 있어 ‘신의의 준수’(observance of good faith)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¹⁴⁾ 다만 UECIC의 적용을 받으나 UECIC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된 문제는 UECIC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에 부합하도록 해결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하여 적용가능한 법률과 조화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제한요건을 부가하고 있다(UECIC, 제3조 및 연관규정으로서 CISG, 제6조).

3) 당사자의 위치와 정보요건

UECIC의 목적상 당사자의 영업소는 당사자가 표시한 장소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만 그 영업소를 표시한 당사자가 당해 장소에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대방이 반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부가하고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영업소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시까지

13) 사건으로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은 동 조항 및 전자문서에 대한 UECIC의 정의를 고려할 때, 용어의 사용에 있어 정보처리시스템(information processing system)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관규정으로서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1~2항을 참조.

14) 이 경우 신의칙은 법계 및 각양의 법체계하에서 계약법상 준수되어야 할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또는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으로서, 불성실(bad faith)한 행위를 배제하는데 기능하는 것으로 존중되고 있으나, 달리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법계 또는 법체계상 인식정도·접근시각·적용기준 등이 상이하다고 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신의칙은 부당가능성(unconscionability)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경우에 따라 공정성(fairness), ‘공정한 행위’(fair conduct), 합리성(reasonableness), 공정거래에 있어 ‘합리적 기준’(reasonable standards), ‘공동일치의 정신’(a spirit of solidarity), ‘공평한 행동’(decent behavior), ‘사실상의 정직’(honesty in fact), ‘양심과 선의’(white heart, empty head) 등과 같은 추상적·포괄적 개념에 의해되거나 동일시되고 있다. 다만 어느 경우에서나 신의칙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에 본질적 기능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합의과정에서 고려할 수 없었거나 또는 예견치 못했던 장래의 수많은 우연적 분쟁의 소지를 신의칙의 적용하에 둘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통하여 이에 상당한 필요의적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실익을 향유한다. 결국 신의칙은 ‘계약관계 당사자 간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에 있어 상호 간 이해를 결함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Lücke, 1987; Klein, 1993; Sim, 2001).

알려진 상황이나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시 당사자가 고려한 상황을 참조하여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곳이 UECIC상 영업소가 된다고 하고, 혹여 자연인이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habitual residence)를 영업소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장비 또는 기술이 위치한 곳, 타방 당사자가 그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곳 등은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는 영업소가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유의할 점은 당사자가 단지 특정 국가와 연관된 도메인 이름이나 전자우편주소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그 국가에 있다는 추정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는 사실이다(UECIC, 제6조. 연관규정으로서 CISG, 제10조).

UECIC상 정보요건에 대한 조항은 UECIC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에게 그들의 신원·영업소 또는 다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는 이에 관한 부정확·불완전 또는 허위정보를 제공함에 따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은 유념하여야 할 규정이다(UECIC, 제7조).

3.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

1)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

데이터 메시지에 의한 의사표시의 송·수신에 따른 위험은 그 과정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데이터 메시지에 의한 국제계약에 있어서 고유하게 부각된다. 곧 당해 논점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신원·자격·능력을 가진 진정한 당사자인지,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정하고도 무결한 것인지, 계약의 성립에 따른 법률효과가 유효하게 발생될 수 있을 것인지의 사안 등을 결부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계약당사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거래 정보의 유출 또는 도용에 따른 위험 등이 제기된다. 일례로 정당한 본인이 데이터 메시지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변조에 의해 본인이 한 것처럼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데이터 메시지의 송·수신에 따른 위험분배는 계약당사자 및 이에 관련한 제3자 행위를 포함한 위험부담과 책임귀속의 문제를 모두 포괄한 것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UECIC는 의사표시 또는 계약은 그것이 전자적 의사표시의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 및 집행력이 부인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전제하고(UECIC, 제8조 1항), UECIC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로 하여금 전자적 의사표시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승낙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나, 다만 당사자의 행위로부터 그 사용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유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UECIC, 제8조 2항).

2) 형식요건

UECIC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형식요건과 관련하여, UECIC상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어떠한 특별한 형식으로 작성되거나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서면 흠결의 효과를 정한 경우 그러한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가 이후의 참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가능하다면 그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명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서명 흠결의 효과를 정한 경우 그러한 요건은 i) 전자적 의사표시가 당사자의 신원 확인 및 그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에 관한 당해 당사자의 의도를 표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사용된 경우, ii) 그 사용된 수단이 관련 합의내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비추어 전자적 의사표시가 생성 또는 유통되는 목적에 적합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 iii) 이상의 적시된 기능을 충족하였다는 것이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증거와 함께 사실상 증명된 경우에는 충족된 것으로 본다.

또한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원본의 형태로 활용 가능하거나 보존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원본 흠결의 효과를 정한 경우 그러한 요건은 i)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그 밖의 것으로 최종적 형태로 처음 생성된 때부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무결성(integrity)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이 존재하는 경우, ii) 전자적 의사표시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활용 가능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활용할 사람에게 현시(display)될 수 있는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¹⁵⁾

3)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수신시기 및 장소

UECIC상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기는 전자적 의사표시가 송신자 또는 송신자를 대리하여 송신하는 당사자의 통제 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난 때로부터,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가 송신자 내지 송신자 대리인의 통제 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나지 않았다면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된 때로부터 기산된다(UECIC, 제10조 1항).

달리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미리 지정한 전자주소에서 그 전자적 의사표시를 검색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기산되는데, 다만 수신자의 다른 전자주소로 송신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그 주소에서 전자적 의사표시를 검색할 수 있고,¹⁶⁾ 전자적 의사표시가

15) 여기서 무결성(integrity)의 판단기준은 의사표시·지장 및 현시 등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적 기재나 변경을 제외하고 그 정보가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지 여부이며, 당해 사안에서 요구되는 신뢰성의 표준은 그 정보가 생성된 목적 및 모든 관련 상황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UECIC, 제9조 5항).

16) 곧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자의 전자주소에 도달한 때에 수신자는 그 전자적 의사표시를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UECIC, 제10조 2항).

그 주소로 송신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때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자적 의사표시는 UECIC 제6조 당사자의 위치에 따라 송신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가 있는 것으로 결정된 장소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¹⁷⁾

4) 청약의 유인

전자상거래는 전통적 상거래에 비해 ‘익명적 상거래’(anonymous commerce)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사후의 구제수단이 취약하고 그 회복과정이 복잡다단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상거래 안전과 계약당사자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 (Jan Grijpink, 2001). 이와 같은 배경에서 청약의 유인 내지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시기의 확정이라는 시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UECIC에서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한 주문신청을 위하여 상호작용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한 제안을 포함하여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특정 당사자에 대한 제안이 아니라 그 정보시스템 사용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안은 그 제안을 승낙에 기속시키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지 않았다면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고 하여 청약의 유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UECIC, 제11조).

5)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의 이용

통상 ‘전자적 대리인’(electronic agents)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 추이에 비추어 점차 그 사용이 상례화 되고 있는데, UECIC에서도 이를 적의 반영하여 계약체결 시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의 이용과 관련, 당해 시스템과 자연인의 상호작용 또는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연인이 그 시스템에 의한 각 단계나 성립될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 및 집행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6)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

UECIC는 동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전자적 의사표시의 교환을 통하여 계약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상하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의 계약조건이 포함된 전자적 의사표시

17) UECIC 제10조 2항은 전자주소가 운용되는 정보시스템이 소재한 장소가 동 조 제3항에 의하여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된 것으로 보는 장소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UECIC, 제10조 4항).

를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는 위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지 못한 것에 따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UECIC의 법적 기반을 명료히 하고 있다(UECIC, 제12조 내지 제13조).

7)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

전자상거래에 있어 데이터 메시지의 교환 시 오류 및 착오의 처리문제는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의 사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에 대하여 UECIC에서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과 교환되는 전자적 의사표시에서 입력 오류를 범하였고, 당해 시스템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i)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오류 사실을 안 직후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자신이 전자적 의사표시에서 오류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한 경우, ii)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이익 또는 가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오류를 범한 당해 전자적 의사표시 부분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명정해 두고 있다(UECIC, 제14조).¹⁸⁾

IV. UECIC 실무적용상의 유의점

1. 적용범위에 관하여

UECIC는 전자계약(electronic contracting)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지 않고 있다. 곧 정보처리 시스템, 데이터 메시지,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 등에 의한 국제계약을 고려함에 있어서 동 개념을 명정하여 두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라고 생각된다.

생략적으로 UECIC는 CISG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나아가 전자적 환경하에서 CISG를 보충할 수 있는 협약임을 고려할 때 더욱이 그러하다. 다만 선행입법을 참고할 때, UNCITRAL 모델법 제2조 (a)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전자계약은 전자적 통신수단 또는 데이터 메시지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¹⁹⁾ 즉 전자계약은 여타의 구체화된 목적물 또는 형식요건을 기초로 한 부분이 아니라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데이터 메시지에 의해 체결되거나 입증되는 것으로 그 개념 및 적용범위를 확립하는 것이 UECIC 정의규정에 비추

18) 이하 절차상 요건에 대한 UECIC 최종규정의 내용은 UECIC 평가와 실무적용상 유의점에 주안점을 둔 본 고의 목적을 고려하여 생략한다. 당해 부분에 대한 상세는 UN General Assembly A/RES/60/21. para. 251~324.

19) UN General Assembly A/CN.9/WG.IV/WP.95, para. 10.

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UECIC에서 다루고 있는 계약의 유형이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시스템 및 기타 국제 전자상거래의 기술적 진전에 따른 법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법적 수용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참고할 때, 전자계약에 의하여 제기된 특수성 및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전통적 물품매매 이외의 국제 전자상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조화된 통일법으로서 위상제고에 유용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UECIC는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매매계약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계약, 즉 전자적 방법 또는 데이터 메시지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또는 입증되는 모든 계약을 포함하는 것을 적용범위로 두고 있다는 시각에서 그 유용성이 부각된다.

한편 실제로 전자상거래에 있어 계약은 데이터 메시지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로써 뿐만 아니라 구두·텔렉스·종이문서·전자우편·web communication 등과 혼합되어 체결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할 때, UECIC상 계약이 데이터 메시지 내지 이에 상당한 정보에 의해서만 체결되는 경우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할 경우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²⁰⁾ 이는 전자계약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전자계약의 성립 등에 대한 부속개념이 UECIC내 부재하거나 또는 관련 규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에서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자계약의 적용범위 내지 한계와 관련하여 가사 전자계약과 일반계약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이처럼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실무적용상 법적 안정성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용의 혼선이 예상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 메시지는 그 특성이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방편에서 실무적 효용성을 갖추고 있다. 예컨대 물품의 수령통지, 계약의 종료와 불이행의 선언, 클레임의 통지,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 EFT) 등에서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UECIC에서는 소비자 계약과 관련하여 적용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CISG 제2조 (a)호의 동일한 규정을 수용하더라도 전자적 상관습을 보다 여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에서이다. 그 배경은 CISG 제2조 (a)호에 있는 ‘알았어야 한다’(ought to have known)는 문구가 전자계약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인터넷과 같은 통신시스템 환경하에서는 해외에 주소를 둔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접근가능성이 서류를 기초로 한 환경에 비하여 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하는 바에 기초한다.

2. 당사자의 위치와 정보요건에 관하여

살피기에 UNCITRAL의 국제상사법규범은 대개의 경우 국제계약에만 적용된다.²¹⁾ 이 경우 당해

20) UN General Assembly A/CN.9/509, para. 34

21)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만한 예외사항은 UNCITRAL 모델법이다. 즉 동 모델법에서는 국내 및 국제거래를 구분치

법규범하에서 계약의 국제성(internationality)을 결정하는 기준은, 예컨대 여러 국가에서 양당사자의 영업소 또는 상거소(habitual residence)와 관련한 것에서부터 2개국 이상과 중요한 관련성을 가졌거나 또는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계약의 특성 등 일반적 국제거래 적용범위의 기준이 다양하다.²²⁾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는 데이터 메시지가 송·수신된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때로는 곤란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전송 프로토콜은 전자문서가 하나의 정보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인도되는 순간, 즉 수신인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수령되거나 또는 읽혀지는 순간을 통상적으로 등록한다.²³⁾ 이 경우 송신프로토콜은 정보시스템의 지리적 위치를 늘 표시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UECIC는 데이터 메시지의 발송지 및 수령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영업소를 정의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물리적인 국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CISG 제10조 (a)항 영업소의 개념이 무국경화(borderless)를 지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의제될 수 있는지에 관련한 입법적 고려의 결과로서, 가사 같은 개념으로 동일시 할 경우 개념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같은 대상에 대하여 새로운 용어로써 정의할 경우 법적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존치된 규정임을 적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 유효성에 관하여

1) 데이터 메시지의 문서성

UECIC 제4조 (c)항과 관련하여 데이터 메시지가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국제계약의 수단으로써 유효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통적 종이문서에 상당하는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함을 바로 새겨야 한다. 곧 i)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기록 또는 내용의 차이가 종이문서와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다만 전달수단의 차이로 보아 법적효과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八尾 晃, 2001), ii) 데이터 메시지의 문서성[곧 paper-based documentation]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계약당사자가 데이터 메시지에 수용된 정보, 즉 기록·내용에 항상 접속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UNCITRAL 모델법, 제6조), iii) 데이터 메시지가 보존·유지관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iv) 이상의 전제와 조건은 달리 당사자 간의 특약을 통해서라도 배제될 수 없어야 함이 보장되어야 한다(UNCITRAL 모델법, 제5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데이터 메시지는 종이문서에 상당하는 ‘기능적 등가물

않고 당사자 합의에 일임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UN General Assembly A/CN.9/WG.IV/WP.95, para. 25.).

22) UECIC상 연관규정은 제17조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참여’(participation b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및 제18조 ‘국내영역 단위에서의 효력’(effect in domestic territorial units) 등.

23) UN General Assembly A/CN.9/WG.IV/WP.95, para. 29.

'(functional-equivalent)로서 그 법적 효력이 부여되고 있으나, UECIC 자체가 임의법규라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사법의 차지에서는 종이문서로서의 일정한 형식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규정이 산재하여 데이터 메시지가 전통적 종이문서와 동등한 법률효과를 발생함에 있어 일부 제한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EU Directive'에서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자계약의 유효한 이용을 저해하거나 데이터 메시지로 체결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법적 효과나 유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²⁴⁾ 개별사안으로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이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i)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취득 등에 관련한 계약, ii) 공증인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계약, iii) 상거래 또는 직업적인 무역을 목적으로 당해인의 행위에 의한 보증계약 및 근저당에 관한 계약, iv) 가족법 또는 상속법에 관한 계약, v) 정부 당국에의 신고가 효력발생의 요건이 되는 계약 등은 각 가맹국의 판단으로 데이터 메시지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²⁵⁾

요컨대 데이터 메시지는 단지 비트(bit)의 조합이라는 한계와 이상과 같이 일부 개별사안에 관한 법적 제한이 뒤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메시지의 문서성은 제반 법규범하에서 널리 승인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2) 데이터 메시지의 진정성과 무결성

데이터 메시지에 의한 의사표시의 송·수신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여 전자서명 내지 인증의 수단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전자서명의 내용 및 기록의 유출이나 도용 등에 의해 정당하지 않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전자서명의 불법사용자에게 인증기관이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귀속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폐쇄형 통신망'(closed networks)에서는 가령 ISP가 이 같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당사자와 체결해 두고 있는 약정에 전자문서의 진정성(authenticity)과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명세(specifications)와 법적 효과를 명기하고 책임귀속에 대한 합의의 절차를 두고 있는 까닭에, 실무적으로 ISP는 정당한 수신자에게 데이터 메시지의 송신자가 자격있는 당사자인지 아니면 당사자를 대신하여 송신할 권한을 가진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단의 인증서비스를 통하여 제반 위험을 제거하고 있다(최준선, 2001).²⁶⁾

24) EU Directive, Article 9. 1 :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ir legal system allows contracts to be concluded by electronic means. Member States shall in particular ensure that the legal requirements applicable to the contractual process neither create obstacles for the use of electronic contracts nor result in such contracts being deprived of legal effectiveness and validity on account of their having been made by electronic means."

25) EU Directive, Article 9. 2 : "Member States may lay down that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all or certain contracts falling into on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 (a) contracts that create or transfer rights in real estate, except for rental rights ; (b) contracts requiring by the involvement of courts, public authorities or professions exercising public authority ; (c) contracts of suretyship granted and on collateral securities furnished by persons acting for purposes outside their trade, business or profession ; (d) contracts governed by family law or by the law of success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데이터 메시지의 교환에 있어 예컨대 제3자가 신원정보를 도용하여 당사자 본인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보내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다. 한편으로 본인에게 신원정보의 관리 소홀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달리 본인에게 전혀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요건으로서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일정한 관여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다.

당해 논점은 데이터 메시지 수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신된 데이터 메시지가 정당한 송신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진정성을 확인하고, 본인으로서의 송신자가 데이터 메시지의 작성권한을 부여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의무를 수신자가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는 전자적 의사표시 송신자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로서 송신자가 선의 또는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 있는지, 수신인이 전자적 대리인에 관한 실수나 착오를 입증할 수 있는지, 불법도용자(cracker)를 특별히 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생각건대 책임귀속의 문제는 ‘공개키 기반구조’(public-key infrastructure : PKI)가 채택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면 송·수신된 데이터 메시지를 신뢰하는 것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도 현재까지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스템 운영체제의 전반을 고려할 경우 결국 당해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보험에 부보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UECIC 적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1) 데이터 메시지의 증거능력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데이터 메시지 활성화의 견지에서는 일부 서면의 개념을 확대시키자는 제안도 있다. 즉 서면을 종이에 기록된 것 뿐만 아니라 정보의 완전한 기록을 보존하는 통신의 모든 방식을 포함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방법, 혹은 통신의 송·수신인이 합의한 약정에 따라 작성자를 인증하는 포괄적 범위로서 정의하자고 하는 바가 당해 제안의 핵심이다(八尾 晃, 2001).

입법례를 살펴기에 미국의 UETA에서는 기록이나 서명은 그것이 전자적 형식이라는 것을 이유로 법률효과나 강제력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계약은 그 성립에 있어서 데이터 메시지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효과나 강제력이 부인되지 않고 법에서 서면에 의한 기록 및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데이터 메시지로도 만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⁶⁾ 또한 E-Sign에서도 주간 또는

26)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 Article 2, (b), (e).

27) UETA, Section 7 : “(a) A record or signature may not be denied legal effect or enforceability solely because it is in electronic form., (b) A contract may not be denied legal effect or enforceability solely because an electronic record was

외국간 상거래에 있어서 서명·계약 또는 상거래와 관련한 어떠한 기록은 어떠한 법률·규칙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 및 당해 상거래와 관련한 계약서는 전자서명 또는 데이터 메시지가 그 형식으로 사용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법적효과, 계약의 유효성 또는 이행성을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⁸⁾

이 같은 규정내용을 배경으로 데이터 메시지의 증거능력에 관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로 영미법상 증거법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최적증거의 법칙’(best evidence rule)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원칙에 의할 경우 법정은 등본의 이차적 증거가 아니라 문서의 원본을 요구한다. 가령 데이터 메시지가 법정에서 제출되는 경우 이는 출력된 것이거나 법정 단말기(terminal)의 현시에 불과한, 즉 컴퓨터에 보존된 기록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환 또는 출력된 것이다. 이 경우 과연 데이터 메시지가 원본을 제출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메시지 자체의 증거능력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입법례가 없는 배경에 기초한다.²⁹⁾

UNCITRAL 모델법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데이터 메시지는 법적 효력이 서면에 상당할 수 있다는 동기능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동 모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소송 시 증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i) 그것이 데이터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ii) 또는 이를 인용한 자가 입수하기에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적증거인 경우에 그것이 원본 형태가 아닌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 데이터 메시지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조 제2항에서는 데이터 메시지 형태의 정보는 적정한 증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 데이터 메시지의 증거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데이터 메시지 작성방법의 신뢰성, 작성자의 확인방법 및 기타 제반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부가하고 있다.

이상의 UNCITRAL 모델법의 규정은 데이터 메시지가 문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증거능력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데이터 메시지는 비단 전자적 비트의 조합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메시지의 증거가치를 어느 경우에도 널리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접근시각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구분하면, i) 영미법상의 시각에서 서면과 데이터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선 인정하고 데이터 메시지는 작성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한 데이터 메시지 그대로를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형식적·실질적으로 그 증거력을 인정하려는 방식과 ii) UNCITRAL 모델법에서 볼 수 있는 기능적 등가물 방식에의 접근으로 양분된다.

한편 UNCITRAL 모델법 제8조 원본성(original) 및 제9조 ‘데이터 메시지의 허용성과 증거능력’

used in its formation.”

28) E-Sign, Section 101 : “Notwithstanding any statute, regulation, or other rule of law, with respect to any transaction in or affecting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1) a signature, contract, or other record relating to such transaction may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or enforceability solely because it is in electronic form.”, “(2) a contract relating to such transaction may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or enforceability solely because an electronic signature or electronic record was used in its formation.”

29) 이에 대응하여 UECIC, 제8조 내지 제9조. 참조.

(admissibility and evidential weight of data messages) 등에 관한 규정은 전자상거래에 있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기타 법적 요건, 즉 원본서류의 제시에 관한 요건 또는 서류 및 기록물의 보존과 관련된 요건을 다루고 있다. 곧 데이터 메시지가 실질적으로 원본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원본성 충족여부 및 증거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UNCITRAL 모델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작성방법의 신뢰성, 작성자의 신원확인, 작성자의 책임귀속, 기술적 수준 등을 적합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UECIC에서는 이 같은 요건이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무적용상 UECIC 적용 이후 데이터 메시지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별단의 주의와 고려가 요구된다.

2)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국제계약상의 준거법

국제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내상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국제사법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분쟁에 대해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준거법의 결정과, 분쟁을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할 것인지에 대한 재판관할의 결정이 그 핵심이다.

가상공간을 기반으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국제상거래에 있어 이러한 국제사법적 문제를 별단의 특유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 가상공간의 특성에 비추어 문제가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이 같은 개연성은 전통적으로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제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실정의 국제사법적 범규범이 과연 가상공간에서의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을 규율하기에 적절한가 하는 시각에 귀착된다(석광현, 2001). 곧 가상공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계약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실정의 국제사법의 틀 가운데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나, 한편 가상공간에 적합한 상관습법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등의 논의가 있다.

UECIC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제상거래와 관련 국제적 성격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국적보다는 계약당사자의 영업소를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다. 결국 전통적 상거래 환경하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행위에 따른 장소 및 시간 특정여부의 구별이 용이하나 전자상거래에서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통적 준거법과 재판관할권 결정방식에 별단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Katsh Ethan and Rifkin Janet, 2001).

준거법의 결정은 계약당사자 간 사전합의 또는 자치에 따라 결정되고 행사됨이 원칙이며, 재판관할의 결정에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각국의 법령으로 정해진 전속관할(exclusive jurisdiction)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원칙은 동일하다. 이를테면 준거법은 국경을 초월한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로써 그 지정은 각국 국제사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고 당사자가 ‘법의 선택’(choice of law)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를 판단한다.

분쟁해결에 관한 일반적 규칙은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바가 없는 경우 당해 상거래에 있어 당

사자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 또는 지역의 법이 우선한다. 예컨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에는 계약체결지·계약이행지·피고인의 소재지 등의 장소적 요소가 고려된다. 결국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 지정이 우선하고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 지정이 없는 경우는 보충적으로 행위지법에 의하고 있다. 이에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 선택을 인정하는 근거로는 예측가능성 확보의 중요성이라는 적극적 근거와 다양한 계약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고정적 사실에만 기초하여 준거법을 고려하는 것은 한편으로 불합리하다고 하는 소극적 근거가 존재한다.

요컨대 전자상거래의 경우 국제계약과 국내계약의 구별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적 요소가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정 또한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 국내계약이라도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인다.

입법례로서 UCITA에서는 당사자 간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접속계약 또는 저작물의 전자적 인도에 해당하는 계약은 계약체결 시 저작물의 소재 관할법에 의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UCITA, 제109조 (1)항). 그 이유는 계약체결지나 정보의 도착지가 불명확하거나 알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형의 매개체로 저작물 인도에 관한 소비자 계약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인도되거나 인도되었어야 하는 관할구역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 이외의 경우는 상거래와 가장 중요한 관련이 있는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UCITA, 제109조 (2), (3)항).

한편 UCITA상 계약체결의 소재지 결정에 관하여는 일방이 하나의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에 소재해 있으며 만약 복수 이상의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물리적인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설립 또는 주 등록지에 위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UCITA, 제109조 (d)항).

V. 요약 및 결론

UNCITRAL에 의한 UECIC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으로부터 국제상거래의 효율성과 무역연계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에 참여한 계약당사자와 시장에 새로운 접근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에 입법취지를 둔 CISG 부속협약으로서의 지위를 점한다.

UECIC는 그간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의 법적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이 국제무역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 제반 국제통일법 규범의 적용으로부터 기인하는 장애를 비롯한 국제계약상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따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안되었음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요컨대 UECIC는 국제상거래에 임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국제계약의 법적 확실성과 예측가능

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서 그리고 전자적 의사표시에 기한 계약당사자에게 국제사법상 법률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매체와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치적 실익을 담보하고 있다. 나아가 상이한 체제로부터 당사국이 적의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의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일반적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법적 함의를 구할 수 있다.

본 고는 UECIC의 제1장 적용영역, 제2장 일반규정, 제3장 국제계약에서의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을 중심으로 동 협약의 법적 함의와 규정내용에 대한 유의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UECIC의 적용에 있어서의 유의점 및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i) UECIC는 전자계약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선행입법례를 참고하여 여타의 구체화된 목적물 또는 형식요건을 기초로 한 부분이 아닌, 다만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또는 데이터 메시지에 의해 체결되거나 입증되는 것으로 그 개념 및 적용범위를 확립하는 것이 UECIC 제4조의 정의규정에 비추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UECIC 적용배제의 요건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물품의 인도를 지배하는 유통증권은 그 자체가 물품의 인도를 위해 사용된 경우 마땅히 UECIC 적용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ii) 영업소의 소재지와 관련하여 UECIC는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 계약의 성립 또는 이행에 관련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적용된다고 전제하고, 당해 영업소는 당사자가 특정장소 밖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임시적 제공을 하는 곳이 아닌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상설적 설비를 가지고 있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내용상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해 계약이나 당사자간 상거래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시에 계약당사자가 공개한 정보로부터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한편 당사자가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장비 또는 기술이 위치한 곳, 타방 당사자가 그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곳 등은 그 사실만으로는 영업소가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사자가 단지 특정 국가와 연관된 도메인 이름이나 전자우편주소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 영업소가 그 국가에 있다는 추정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유의하여야 한다.

iii) UECIC는 임의법규로서 계약당사자는 동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각 조항의 효력을 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UECIC는 당사자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바, UECIC상의 모든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를 적의 변경·조정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한편 UECIC의 정의 규정상 정보시스템은 데이터 메시지의 정의를 참고할 때 응당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사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송·수신자의 지위에 있어 중개인은 배제되며,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위를 개시하거나 데이터 메시지 또는 그 실행에 응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화 또는 그 밖의 자동화된 수단으로서 시스템에 의하여 행위가 개시되거나 응답이 생성될 때 자연인에 의한 검토나 개입이 없는 것임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iv)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과 관련, UECIC는 의사표시 또는 계약은 그것이 전자적 의사표시의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 및 집행력이 부인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전제하고, UECIC의 제 규정도 당사자로 하여금 전자적 의사표시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승낙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나, 다만 당사자의 행위로부터 그 사용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유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식요건과 관련 UECIC는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어떠한 특별한 형식으로 작성되거나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서면 효력의 효과를 정한 경우 그러한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가 이후의 참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가능하다면 그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반 국제사법의 강행규정은 적의 고려하여야 함은 선결요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v)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미리 지정한 전자주소에서 그 전자적 의사표시를 검색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기산되나, 수신자의 다른 전자주소로 송신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그 주소에서 전자적 의사표시를 검색할 수 있고, 전자적 의사표시가 그 주소로 송신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유의점은 전자적 의사표시는 UECIC 제6조 당사자의 위치에 따라 송·수신자의 영업소가 있는 것으로 결정된 장소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vi) UECIC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한 주문신청을 위해 상호작용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한 제안을 포함하여 1인 또는 복수 이상의 특정 당사자에 대한 제안이 아니라 그 정보시스템 사용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 또는 복수 이상의 전자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안은 그 제안을 승낙에 구속시키고자 하는 당사자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청약의 유인으로 일괄하고 있다. CISG상 제14조 청약의 기준과 비교를 통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vii) 데이터 메시지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UECIC는 증거능력에 대한 요건이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실무적용상 UECIC 적용 이후 데이터 메시지 증거능력에 대한 별단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준거법과 관련,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는 국제적 성격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국적보다는 계약당사자의 영업소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바, UECIC상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전통적 준거법과 재판관할권 결정방식에 대한 고려는 계약체결상 반드시 명정해 두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서민교(2008), “전자상거래에 관한 한·미 FTA의 평가와 향후 과제”, 「e-비즈니스연구」 제9권 2호, 국제 e-비즈니스학회, 103~106면.
- 식광현(2001),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서울: 박영사, 112~113면.
- 심종석(2002),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11면.
- _____(2004),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문서 인증시스템에 관한 법적 고찰”, 「경영법률」 제14집 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312면.
- 최준선(2001),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의 제문제”, 「무역상무연구」 제1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20~221면.
- 北川善太郎(2002), “システム契約 - 情報化社会における契約類型”, *NBL* No. 393, p.6.
- 八尾 晃(2001), *貿易・金融の国際取引：基礎と展開*, 東京経済情報出版, p.63, p.108.
- Michael J. Bonell(1997),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2nd ed., Transnational Pub., pp.50-52.
- Steven H. Gifis(1996), *Law Dictionary*, 4th ed., Barron's Educational Series, p.519.
- Honnold, John O(1999),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para. 53.
- Jan Grijpink(2001), “New Rule for Anonymous Electronic Transaction? : An Exploration of the Private Law Implications of Digital Anonymity”, *Journal of Information, Law and Technology(JILT)*, Univ. of Warwick and Univ. of Strathclyde.
- Katsh Ethan · Rifkin Janet(2001), *Online Dispute Resolution : Resolving Conflicition Cyberspace*, Jossey-Bass, pp.117~119.
- Klein J(1993),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Liverpool Law Review*, pp.116~117.
- Lücke H. K(1987), “Good Faith and Contractual Performance”, *Essays on Contract*, The Law Book Company Ltd., p.160.
- Sim D(2001),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Good Faith in the Vienna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ace Law*, Pa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II. A.
-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 ‘Digital Signature Bill’

-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 E-Sign’
- ‘EU Directive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Guide to enactment of the UNCITRAL Model Law’
- ‘ICC 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 eUCP’
- ‘OECD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ntracts Concluded or Evidenced by Data Message’
-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
-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 UECIC’
- ‘UN General Assembly A/CN.9/509’
- ‘UN General Assembly A/CN.9/WG.IV/WP.95’
- ‘UN General Assembly A/RES/60/21’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 ‘Uniform Computer Transactions Act : UCITA’
- ‘Uniform Electronic Commerce Act : UECA’
-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UETA’

ABSTRACT

A Study on the Valuation for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Chong-Seok Shim

Related to the definitions for the UECIC, that's regulations are following.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Communication means any statement, declaration, demand, notice or request, including an offer and the acceptance of an offer, that the parties are required to make or choose to make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any communication that the parties make by means of data messages; Data message means information generated, sent,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magnetic, optical or similar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lectronic mail, telegram, telex or telecopy; Originator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a party by whom, or on whose behal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has been sent or generated prior to storage, if any, but it does not include a party acting as an intermediary with respect to that electronic communication; Addressee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a party who is intended by the originator to receive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but does not include a party acting as an intermediary with respect to that electronic communication; Information system means a system for generating, sending, receiving, storing or otherwise processing data messages; Automated message system means a computer program or an electronic or other automated means used to initiate an action or respond to data messages or performances in whole or in part, without review or intervention by a natural person each time an action is initiated or a response is generated by the system; Finally, Place of business means any place where a party maintains a nontransitory establishment to pursue an economic activity other than the temporary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out of a specific location.

Key Words : UECIC, Electronic communication, Data message, Information system, Automated message system.